

2021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근현대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09. 14. (화요일), 14:00~17:00
- ▣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본관 3층)
- ▣ 출석위원 : 김기수(위원장), 권기혁, 김사덕, 김영숙, 도인수,
도진영, 백민호, 전경미, 정광용, 최병하 등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구 구산세관 본관 지붕 및 창호 보수

【보고사항】

2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업무 개선 방안

【심의사항】

안건번호 : 근현대 2021 - 1차 - 001

1. 구 군산세관 본관 지붕 및 창호 보수

가. 제안사항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지붕 및 창호 보수사업에 대한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지붕누수가 심한 본관에 대하여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노후 및 변형이 심한 창호 보수와 주변 배수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설계(안)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군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군산세관 본관(사적)
 -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4-7(장미동, 군산세관)
 - 지 정 일 : 2018. 08. 06.
- (3) 신청내용
 - 목공사 : 지붕개판 교체(60%) 등
 - 조적 및 수장공사 : 본관 우측면 치장쌓기(11.22㎡)
 - 석공사 : 외부 계단 해체 후 재설치(2개소)
 - 미장 및 방수공사 : 본관 평지붕 상부 우레탄 도막방수 실시
 - 지붕 및 흙통공사 : 석면슬레이트 해체 후 천연슬레이트 설치(298.52㎡)
 - 창호공사 : 알루미늄 창호 철거 후 오르내리 목재창 설치(27개소)
 - 배수공사 : 유공관 설치 45.8m

라. 관계전문가 의견

<2021. 07. 08 / 근대분과 문화재위원 ○○○>

- 해당 문화재의 “문화재로서” 연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준공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건축적 변화상을 기록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면화)
- 세관 영역 전체를 기록화 대상으로 정리할 것

- 타지역 “해관”, “세관”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지붕속, 바닥아래, 기초 등의 사항이 평·입·단면에 표현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 (현상변경절차 필요치 않은 범위내에서 내시경카메라 등 활용)
- 창호는 고증자료를 토대로 복원할 필요 있음.
- 구조적인 사항은 건축구조전문가의 확인을 받을 것
- 건축물 주변의 지면을 원래의 높이로 낮출 필요 있음.
- 누수원인 규명과 해결책이 설계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 있음.

<근대분과 문화재위원 ○○○>

- 지붕 관련 보수는 부분해체 후 관계전문가의 확인, 자문을 받은 후 구체적인 보수 범위와 기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정면 창호 복원은 내부 마감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문화재의 장기적 보존과 배수 정비를 위해서 주변 지반 정비가 필요함.
- 현재 본관 내부에 전시된 콘텐츠에 대한 재구성, 변화가 필요함.

<근대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 전면부 평지붕은 해체하여 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평지붕 상부의 구조물이 원형과 상이하므로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창호의 경우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면의 경우 내부마감과 내부공간 활용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바닥 레벨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세관과의 외부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조안전진단은 구조 전문가를 통한 별도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근대분과 문화재위원 ○○○>

- 과업의 범위가 지붕재료 변경에 따른 지붕구조의 안전성 평가로 한정된 만큼 정밀안전진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역으로 전체적인 안전진단(내진평가 포함)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붕구조의 안전성 검토는 지붕트러스모델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절점-편)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재료의 허용응력 및 수중에 대한 가정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샘플링이 이루어지거나 최소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 2021. 07. 27/ 근대분과 문화재위원 ○○○, 근대분과 전문위원 ○○○ >

- 현재 군산세관의 창호는 외부에 알루미늄 샷시창, 내부는 목재창, 또는 알루미늄 샷시로 구성되어 있어 군산세관의 외관을 해치고 있으며, 창이 노후되어 개폐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또한 배면의 경우 알루미늄 샷시창의 색상도 다르며, 우측면의 경우 1990년대 경비실로 사용하면서 창호의 크기도 변형됨.

1. 정면 출입문 좌우측 창호

- 1906년 경 도면은 전면 목재창으로 구성, 1949년 사진 자료는 하부 조적조 창대가 축조되고 여단이 개폐방식, 1974년 사진 자료는 창호 상부 인방을 벽돌로 구성하고 미단이 개폐방식으로 변경, 현재는 창호 중간에 조적벽을 추가하여 변경되어 있음.
- 창호보수의 기준 시점을 1906년 경 도면으로 할 경우, 전면 목재창의 구조나 창호의 개폐방식, 내부의 마감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특히 창호 개구부 폭이 3.6m로 넓고 상부에 평지붕 구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목재창은 구조적으로 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재의 구조와 같이 창호 상·하부에 조적벽, 중앙에 조적벽을 구성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창호는 목재 미단이형으로 하되, 창살은 1910~30년대 사진 자료와 같은 격자형으로 계획

2. 정면 좌측 아치창

- 1906년 경 도면은 아치창 하부가 목재로 구성되고 창 중앙부에 오르내리창, 1959년 사진 자료는 하부에 조적조 위 화강석 창대석이 설치되고(사진 자료는 없지만 1949년 중앙 출입문 좌우 창대 변형된 시기에 바뀌었을 것으로 보임) 여단이형으로 변경되며 1974년까지 유지됨.
- 창호보수의 기준 시점을 1906년 경 도면으로 할 경우, 중앙 좌우측 창호와 마찬가지로 아치하부의 구조, 내부 마감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아치창은 하부를 제외하고 아치의 형태나 크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아치 형태를 유지하되, 창호의 개폐방식은 1906년 경 도면을 기준으로 오르내리창으로 계획

3. 그 외 창호

- 창호 상하부에 화강석 창인방석과 창대석이 남아 있고, 창호 크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단이형 알루미늄 샷시창으로 창호의 재료와 개폐방식이 변형된 상태임.
- 1910~30년대, 1949년 사진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므로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

- 정면 우측, 배면 좌우측 박공면의 창호는 상부에 고정창, 하부에 오르내리창으로 계획
- 좌우측면과 배면 중앙부 창호는 오르내리창으로 계획
- 우측면의 경비실로 사용되면서 창호크기가 변형된 창호는 원래 모습을 반영하여 계획
- 좌측면의 중앙부 창호는 원래 출입문이 있었던 곳으로, 출입문으로 보수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창호를 유지하되, 창호의 재료와 창살 등은 정면 출입문 좌우측 창호와 같은 형태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내부 창호는 사용자의 내부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방한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방충망도 설치

마. 검토의견

- 안전진단(2021년) 결과 지붕재 변경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사용 중지된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고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천연슬레이트로 교체하는 사항은 적절함.
- 누수가 발생한 평지붕 상부에 현재와 같이 우레탄 방수제를 재시공하는 사항과 건물 주변 유공관을 매립하여 외부배수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현재의 알루미늄 창호는 모두 제거하고 고증자료(옛 사진 및 도면)와 현재의 건물 모습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 창호 보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설계도서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되,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 과정에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할 것
 - 지붕 마감재 시공방법, 배수로 설치 방법, 창호 목재 수종 선정, 정밀 안전진단 시행 여부
 - 창호 복원 기준(시기) 및 설계 자문의견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방서에 명시하도록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 가결 10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 근현대 2021 - 1차 - 002

2.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업무 개선 방안

가. 제안사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일부 중복되는 심의사항을 합리적 운영 및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설계승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간 중복 심의 사항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처리기간 증가 및 민원 제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다. 현황 및 문제점

① 현상변경과 설계심사 내용의 중복에 따른 업무 혼선

- 동일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 사항에 중복과 차이점이 있어, 사업내용에 따른 업무구분 필요
- 민간(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절차로 업무 혼선과 허가(승인) 처리 지연 발생, 동일 업무의 반복처리 우려 등
- ① **절차 1** : 현상변경신청 → (허가) → 설계승인신청 → (승인) → 사업착수
- ② **절차 2** : 설계승인신청 → (승인) → 사업착수
-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수리·복원에 대해 문화재청 각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반될 경우 행정의 일관성 및 연속성 부재 우려

② 심의안전 문화재수리에 대한 심의지연 우려 등

- 현황사진 및 설계도서 등 한정된 자료에 의한 설계심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시간 지연 우려 등
-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설계자문 및 기술자문을 한 위원의 경우 심의·의결 제척사유에 해당, 중요사항에 대한 전문적 현황분석에 문제점 노출

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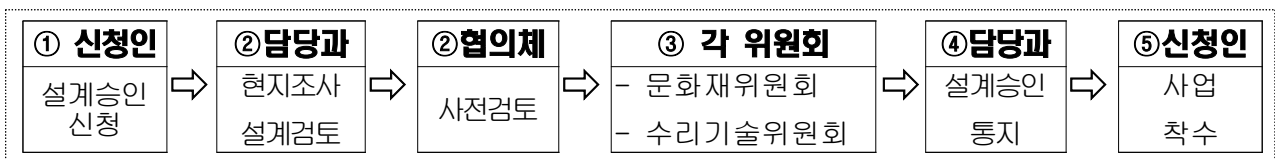
① 사업내용에 따른 업무구분 및 협의체 구성·운영

1. 사업내용에 따른 업무구분

- **문화재위원회 검토** : 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예) 현대적 건축물,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관람로, 관람편의시설 등 정비사업, 수계정비, 조경정비사업 등으로 기본 설계도면을 통해 사업내용 확인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검토** : 당해문화재의 전통적 기술, 기법, 재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예) 훼손(자연재해, 화재 등) 및 변형된 당해문화재의 수리·복원 등으로 상세 계획도면을 통해 사업내용 확인

2. 「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협의체」 구성·운영

- **(필요성)** 문화재의 보존·관리 측면과 당해문화재의 전통적 기술·기법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행정의 일관성 확보 필요
예1) 민간(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의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
예2) 관람편의시설 및 원형고증에 따른 문화재복원이 포함된 복합적인 정비계획 등
- **(구성·운영)** 문화재위원회 및 수리기술위원회 업무협의체
 - 운영 :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 발생 시(수시) 협의체를 통한 사전검토 및 의견조율을 거쳐 각각의 위원회 심의 시 반영
 - 구성 : 해당 문화재 소관 문화재위원 및 수리기술 분과위원 10명 내외
 - 문화재위원회(분과) 5명 + 문화재수리 기술분과위원회 5명
- **(절차도)**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② 심의안전 설계심사의 현장검토 및 소통·협업 기능 강화

1. 현장검토 기능 강화

-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위원 및 전문위원을 통한 현장조사 추진
- 문화재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성과정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참여 유도

2. 소통·협업기능 강화

- 중요문화재 심의 안전은 문화재소관과 및 상근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설계 심사 사전검토회의’ 추진

마. **향후계획** : 각 위원회 보고(의견수렴) 후 설계승인업무 개선(안) 시행

바.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접수 10명